

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수협은행

제1조의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20”을 “27”로 한다.

제1조의3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수납할 출연대상금액, 수납시기, 사후정산방법 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요청하는 경우에는 장래에 납부 할 출연금을 미리 납부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의2(금융기관의 기금출연) ① 「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1. · 2. (생략) <u>3.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</u> 4. ~ 6. (생략)	제1조의2(금융기관의 기금출연) ①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· 2. (현행과 같음) <u>3. 수협은행</u> 4. ~ 6. (현행과 같음)
②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이 법 제4 조제4항에 따라 농림수산업자신용보 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는 출연금의 기준이 되는 대출금(이하 “출연기준 대출금”이라 한다)의 범위와 출연요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금융기관 : 가목의 대출금에서 나목의 대출 금을 제외한 대출금의 월중 평균 잔액에 대한 연율 1만분의 <u>20</u> 가. · 나. (생략) 2. (생략) ③ (생략)	②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----- ----- ----- ----- <u>27</u> 가. · 나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
제1조의3(출연의 시기와 방법) ①제1	제1조의3(출연의 시기와 방법) ①----

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금융기관은 동조제2항제1호에 따른 매월분의 출연금을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. <단서 신설>

② · ③ (생략)

----- . 다만,
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수납
할 출연대상금액, 수납시기, 사후정
산방법 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
승인을 얻어 요청하는 경우에는 장
래에 납부 할 출연금을 미리 납부할
수 있다.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